

종합소득세 신고 보도자료

참 고 자 료

2023. 4.



소득세과

목 차

1. 모두채움 대상자 홈택스(PC) 「원클릭」 신고 방법	1
2. 모두채움 대상자 손택스모바일 앱 「원클릭」 신고 방법	4
3.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7
4. 모두채움(납부·환급) 안내문	8
5. 모바일 안내문 항목별 탭(TAB) 형식	16
6. ARS(1544-9944) 신고	17
7.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20
8.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21
9. 주택임대소득 모의계산 서비스	23
10. 세법 개정사항 요약	25

1 모두채움 대상자 홈택스(PC) 「원클릭」 신고 방법

① 홈택스 첫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선택



②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⑤ 「신고안내자료 요약」 및 「납부(환급)할 세액」 확인

① 신고 안내자료 요약 : 납부(환급)할 세액 212,210 원

종합소득금액		42,814,314 원	세부내역보기
소득공제		10,719,007 원	세부내역보기
과세표준		32,095,307 원	
산출세액		3,734,296 원	
세액감면		0 원	세부내역보기
세액공제		853,200 원	세부내역보기
결정세액		2,881,096 원	
기납부세액	합계	2,668,879 원	
	중간에납세액	2,296,000 원	
	원천징수 등	372,879 원	
납부(환급)할 총 세액		212,210 원	

※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경우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신고서 제출 「동의」 및 「신고서 제출하기」 선택 (환급대상자는 환급계좌 입력)

① 나의 환급계좌 (본인명의계좌만 가능)

은행 계좌번호

- 카카오펙크, 토스뱅크는 한국은행에서 국세환급금 지급은행으로 지정하지 않아 환급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검토 후 6월말~7월초 입금예정입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가산세 부과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②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

소득세 신고서의 전화번호, 환급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위택스)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여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종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신고서 제출하기

신고서 수정하기

2

모두채움 대상자 손택스모바일 앱 「원클릭」 신고 방법



③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 손택스 통합 로그인

ID
비밀번호

아이디저장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 홈택스 서비스는 '이용안내, 상담' 등 일부 콘텐츠를 제외하고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 로그인**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서비스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④ 납세자번호 - 「조회」 선택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정기신고

1 기본사항 2 3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포함),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

● 기본정보 입력

*개인단체 개인 단체(종중)

☞ 개인 또는 단체(종중) 대하여 신고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귀속년도 2022

*주민등록번호 000114 -

성명

주소

도로명 주소

⑤ 「신고안내자료 요약」 및 「납부(환급)할 세액」 확인

신고안내자료 요약 : 납부(환급)할 세액 -681,420원

종합소득금액	5,005,671 원	세부내역보기
소득공제	1,500,000 원	세부내역보기
과세표준	3,505,671 원	
산출세액	210,340 원	
세액감면	0 원	세부내역보기
세액공제	90,000 원	세부내역보기
결정세액	120,340 원	
기납부세액		
중간에납세액	0 원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의 합계	801,760 원	
납부(환급)할 총 세액	-681,420 원	

⑥ 제출 「동의」 및 「제출하기」 선택 (환급대상자는 환급계좌 입력)

나의 환급계좌 (본인명의계좌만 가능)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한국은행에서 국제환급금 지급은행으로 지정하지 않아 환급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검토 후 6월말~7월초 입금 예정입니다.

은행: **환급대상자만 입력**

계좌번호: **환급대상자만 입력** [계좌검증](#)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가산세 부과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동보 제공동의

소득세 신고서의 전화번호, 환급 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위택스)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신고서 수정하기](#)

3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구 분	유 형	안내방식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서면/모바일
	외부조정 대상자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납부)	
	모두채움(환급)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서면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서면
종교인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모두채움(납부)	서면
종교인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모두채움(환급)	서면
비사업자	금융·근로·기타·연금소득자	서면/모바일

[안내문 예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외부조정대상자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니, **확인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 (사업장 최대 10개 까지 표시)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종코드	사업형태	기장의무	수입금액	주요 원천징수 의무자

- *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 :**
*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상세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 :** 원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제공합니다.

- **공제 항목**

구 분	납입액(부담액)	
미리 납부한 세금	중간에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인적용역 사업소득)
소득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세액공제 항목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 **가산세**

가산세 대상

※ **세무서 안내사항 :**

- 7 -

4 모두채움(납부·환급) 안내문

○ 모두채움(납부) 안내문

- 신고기간 : 2023.5.1. ~ 2023.5.31.
- 납부기간 : 2023.5.1. ~ 2023. . .
- ARS 전화(1544-9944)로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RS 개별인증번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

모두채움(납부)

_____ 님,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납부할 세액	_____ 원	_____ 원

아래 방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ARS 전화(☎1544-9944)**로 신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ARS 전화 신고 방법

신 고

1

1544-9944

→

2

개별인증번호 _____ #

→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4

가상계좌 확인

납 부

▶ **종합소득세**

ARS 전화 신고 후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_____ 원 입금

* 가상계좌 문자받기(또는 음성확인) : ☎ 1544-9944 → 2번 → 4번

▶ **개인지방소득세**

아래 가상계좌로 _____ 원 입금

*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 시 신고로 인정

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방법

-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홈택스



신고방법
보기



손택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 홈택스 ①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 ② 예(신고하기)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후) → ③ 「신고이동」 클릭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내역 조회 (전수증·납부서)

상표 (상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영시	접수번호 (신고서번호)	접수서류	전수증	납부서	재증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김...	820123-*	인터넷..	2023-0..	220-2023..	접수서..	보기	보기	kim..	3	신고이동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손택스 (모바일 앱)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개인지방소득세

- 위택스(www.wetax.go.kr) → 납부하기 → 지방세 → 조회하기
-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 조회·납부 → 확인 후 납부

관리번호

총수입금액(총급여액) 및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

■ 총수입금액(총급여액) (최대 10개까지 표시)

(단위: 원)

소득구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처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원천징수 세액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

※ 자세한 내역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확인

-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정기신고)
- ▶ 모바일 앱(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정기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

(단위: 원)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에서 확인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문의는 ☎1661-6800로 하시고 방문이 필요하신 경우 지자체 신고창구 []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 단순경비를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1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접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율) = 800만원 - (800만원 × 60%) = 320만원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각각의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우측 하단)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환급) 안내문

- 신고기간 : 2023.5.1. ~ 2023.5.31.
- **ARS 전화(1544-9944)**로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RS 개별인증번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

모두채움(환급)

_____님, 안녕하십니까,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환급금 지급 불가)

	종합소득세(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	
	환급받을 세액		환급받을 세액	납부할 세액
환급금액	원	원	원	원

아래 방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하시면,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ARS 전화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 [참고] 수령계좌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지역농·축협	1	농협은행	2	KB국민	3	우리	4	신한	5	IBK기업	6	우체국	7	새마을금고	8
KEB하나	9	대구	10	부산	11	SC제일	12	광주	13	경남	14	산림조합	15	KDB산업	16
상호저축	17	수협	18	신협	19	전북	20	제주	21	한국씨티	22	은행코드 입력 후 「#」 입력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계좌는 사용 불가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_____ 원은 종합소득세 환급(6월 말) 후 4주내 입력한 계좌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아래 가상계좌로 _____ 원 입금

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방법

-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 홈택스 ①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 ② 예(신고하기)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후) → ③ 「신고이동」 클릭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성명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서표기)	접수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김...	820123*...	인터넷...	2023-0...	320-2023...	합수서...	보기	보기	km...	3	신고여부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손택스(모바일 앱)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개인지방소득세

- 위택스(www.wetax.go.kr) → 납부하기 → 지방세 → 조회하기
-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 조회·납부 → 확인 후 납부

관리번호

총수입금액(총급여액) 및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

■ 총수입금액(총급여액) (최대 10개까지 표시)

(단위: 원)

소득구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처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원천징수 세액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

※ 자세한 내역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확인

-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정기신고)
- ▶ 모바일 앱(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정기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

(단위: 원)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받을 세액	납부할 세액

- *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 **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에서 확인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문의는 ☎1661-6800로 하시고 방문이 필요하신 경우 지자체 신고창구 []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아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금융기관에서 지급)은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3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 작년엔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

1) 원천징수세액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3.3%**(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 * 인적용역 소득자 : 학원강사, 킥서비스, 행사도우미, 연예인보조출연자,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지급처에서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2)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21년) 종합소득세액의 1/2을 미리 납부

* 21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00만원 이상자 등 일부만 해당

- **환급금이 발생**되는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며, **ARS 전화(☎1544-9944)** 등으로 **신고**하시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추가적인 세금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4쪽의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직접 수정하시고,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하여 환급됩니다.
 -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의한 사전 납부가 없음)

환급발생 사례



- 2022년 중 학원강사 수입 **10,000,000원**이 발생하고 학원에서 **330,000원**(10,000,000×3.3%)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330,000원 중 300,000원은 사업소득세, 30,000원은 개인지방소득세)

필요경비(단순경비율)와 공제를 적용하면 2022년 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할 세금은 **22만원**이나, 해당 납세자는 **33만원**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납부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차액(33만원-22만원)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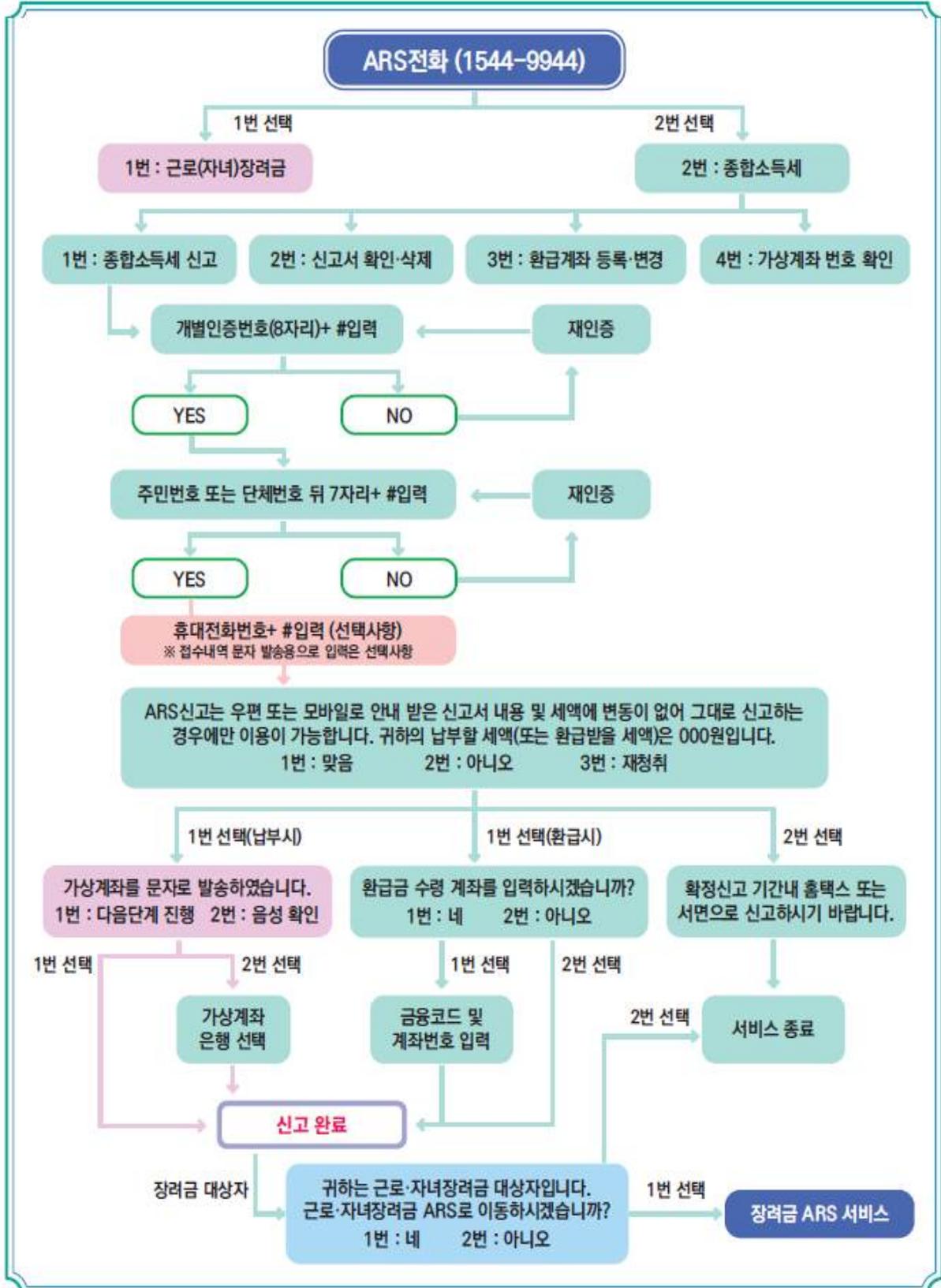
5

모바일 안내문 항목별 탭(TAB) 형식



6 ARS (1544-9944) 신고

○ ARS 신고 흐름도



- 보이는 ARS :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내음성과 함께 터치식 이미지 메뉴가 제공됨

① 「보이는 ARS」 선택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국세청 ARS 신청 신고 센터입니다.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보이는 ARS 음성 ARS

②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국세청 ARS 신청 신고 센터입니다.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환급 계좌 또는 전화번호 등록, 변경, 신청취소)

2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신고확인 또는 삭제요청, 환급계좌, 가상계좌)

③ 원하는 메뉴 선택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종합소득세 신고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1 **소득세 신고서 제출**

2 **신고 내역 확인 또는 삭제 요청**

3 **환급계좌 등록, 변경**

4 **가상 계좌번호 확인**

④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개별인증번호 입력

01 > 02 > 03 > 04 > 05
인증하기 > 신고하기 > 환급계좌 > 신고원료 > 가상계좌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확인 (#)

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⑥ 신고 접수 내역 문자 받기



⑦ 세액 확인 후 「신고」 선택



⑧ 신고 완료



7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① 기장의무

업종별	간편장부	복식부기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자	3억원 이상자	6억원 이상자	15억원 이상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옥탕업	1.5억원 미만자	1.5억원 이상자	3억원 이상자	7.5억원 이상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자	7천5백만원 이상자	1.5억원 이상자	5억원 이상자

* '21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2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 적용

② 추계신고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 '21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이며, '22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으로 계산하며, 기타경비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가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대상
 - 소규모사업자 등에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자 등이 해당

8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① 기본사항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아래 자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안내자료에 대한 문의 : 세무서 소득세과 조사관 (☎ 02-)

귀속년도 2022 [조항하기]

기본사항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신고 안내자료 | 신고상황 종합분석 |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I. 기본사항

성명	***	생년월일	58.
신고안내유형	모두채움(납부)	ARS 개별인증번호	2002***
기장의무구분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단순경비율

납부기한 직권면장 여부

※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실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세액공제 감면 배제, 추계신고시 경비를 1/2적용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운영한 경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이면 기본사항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축되며, 사업형태별(단독, 공동) 기장의무는 수입금액 결정내역에 표시하였음

● 업종별 기장의무, 경비를 적용 기준수입금액 [펼치기]

● 기준경비율을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보다 소득금액 및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펼치기]

I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세액계산 예시(한식 일반음식점(552101) 기준) I

② 신고 시 유의사항

기본사항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신고 안내자료 | 신고상황 종합분석 |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II. 신고시 유의할 사항 안내

● 업종별 유의사항

업종	업종코드	신고시 유의할 사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40600	○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비와 주택구입을 위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등은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였다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 한도 계산시 일반기업의 기본한도액(1,200만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대납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 계속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거래하는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매매 차익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③ 신고 안내자료

기본사항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신고 안내자료** | 신고상황 종합분석 |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IV.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3년 3월말까지 수집된 자료로서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수입종류 구분코드	업종 코드	수입 금액	사업 형태	기장 의무	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주요 원천징수의무자
								일반	자가	일반(기본)	자가(초과)	
		사업소득지급명세...	940...	*****	단독	간편장부	단순	12%	12%	58.0000	41.0000	*****
총 계												
***** 원												

●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

※ '일괄조회' 버튼 클릭시, 보고서(REXPRT)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타소득 자료유무를 O, X로 표시함(안내문 기준)

소득종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단일	복수		
해당여부	X	X	O	X	X	O

※ 종교인기타 소득유무 : (X)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 : 원

④ 신고상황 종합분석



⑤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기본사항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 안내자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 VI.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아래 항목 중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는 2023년 3월말까지 수집된 자료이며 각 항목별로 10건씩 표시됩니다.(중간예납세액:원)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사업장현황신고, 총 0건)

주택소재지	수입금액(원)		합계
	월세	간주임대료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1 | 총 0건(1/1)

1) 202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로 등록) 시 주택임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신 내용입니다.(업종코드 701101 ~ 701104, 701301)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부가가치세 신고, 총 0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종코드	수입금액(원)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1 | 총 0건(1/1)

※ 2022년 1.27기 부가가치세 신고(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 시 주택임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신 내용입니다.(업종코드 701101 ~ 701104, 701301)

● 국내 주택보유 내역(총 0건, 부부합산주택수 총 0건)

주택소재지	면적(㎡)	종류	기준시가(원)	비소형주택 구분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1 | 총 0건(1/1)

1) 재산세 부과 및 주택 취득·양도 자료에 의해 확인된 내역이며 목록에 없는 주택에서 2022년에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자료구축을 위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일부 물건의 소재지는 공무상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현황(총 0건, '2023.4.16. 기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록일자	폐업일자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9 주택임대소득 모의계산 서비스

☐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임대주택 추가하기」 선택 > 주택임대소득 기본사항 입력 > 다른 소득금액 입력 > 소득공제 입력 > 세액감면·세액공제 입력 > 「예상세액 비교하기」 선택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 주택임대소득 기본사항 전체 초기화

※ 임대주택별로 입력하며, 임대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임대주택 추가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하십시오.

도움말 **임대주택 추가하기** 선택내용삭제 (단위: 원)

주택번호	주택구분 [설명]	임대주택 등록기간		전체 임대기간		수입금액 [설명]	소형주택 감면액용 [설명]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업종코드 [설명]	신고유형 [설명]	기장여부 [설명]	전체필요경비 [설명]	주요경비 [설명]	
1	등록	2022-01-0	2022-12-3	2022-01-0	2022-12-3	20,000,000	1호 단기 30%
	701101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대상	3,200,000	1,000,000	15,800,000	

➤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소득금액 (단위: 원)

구분	금액	설명
① 사업소득금액	10,000,000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사업소득(상가 및 토지 등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② 근로소득금액	16,000,000	"총급여액 입력" 버튼을 클릭 후 총급여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③ 연금소득금액	0	"총연금액 입력" 버튼을 클릭 후 종합과세대상 총연금액의 합계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금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④ 기타소득금액	0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⑤ 종합소득금액	41,800,000	
⑥ 소득공제	8,500,000	
⑦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0	
⑧ 과세표준	33,300,000	
⑨ 세율	15	
⑩ 산출세액	3,915,000	
⑪ 감면·공제세액	2,323,949	
⑫ 결정세액	1,591,051	

➤ 종합과세 소득공제 (단위: 원)

공제항목명	사용(납입)금액	소득공제액	설명
인적공제	0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3,000,000	3,000,000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0	0	
☐ 특별소득공제	1,000,000	1,000,000	
- 건강보험료 등	1,000,000	1,000,000	
- 주택자금	0	0	
- 기부금(이월분)	0	0	

➤ 종합과세 세액감면·세액공제 (단위: 원)

공제항목명	감면·공제액	설명
세액감면	443,949	
자녀세액공제	300,000	
연금계좌세액공제	840,000	
보장성보험료공제	0	
의료비	0	

7 **예상세액 비교하기** 전체 초기화

○ 예상세액 모의계산 결과 비교화면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선택 시 결정세액 ✕

(단위 : 원)

구분	종합과세 종합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0,000		20,000,000
주택임대 필요경비	4,200,000		12,000,000
주택임대 소득금액	15,800,000		
종합소득금액	41,800,000	26,000,000	
소득공제(공제금액)	8,500,000	8,500,000	0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0	0	
과세표준	33,300,000	17,500,000	8,000,000
세율	15%	15%	14%
산출세액	3,915,000	1,545,000	1,120,000
감면·공제세액	2,323,949	1,545,000	336,000
결정세액	1,591,051	0	784,000
		784,000	

• 종합과세 시 예상 결정세액은 1,591,051원, 분리과세 시 예상 결정세액은 784,000원으로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의사항>

- 위 계산된 결과는 일부 사항을 검토하여 간편하게 계산된 것으로 실제 세액계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또는 불복자료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종합소득세만을 계산한 결과로 놓여흔특별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 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직원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간주임대료 모의계산 화면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임대주택 추가」 선택 > 임대주택 내역 입력 > 「계산하기」 선택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1 임대주택 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m²)

번호	임대주택	보증금 등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m ²)	기준시가	비소형주택 대상여부	간주임대료
			시작일	종료일				
1	임대주택1	500,000,000	2022-01-01	2022-12-31	80	0	Y	3,600,000
2	임대주택2	1,000,000,000	2022-01-01	2022-12-31	100	0	Y	5,040,000
간주임대료 합계								8,640,000

3 계산하기 초기화

임대기간		임대주택	보증금 등	공제액	보증금 잔액	일 수	보증금 잔액적수	간주임대료
시작일	종료일							
2022-01-01	2022-12-31	임대주택1	500,000,000	0	500,000,000	365	182,500,000,000	3,600,000
2022-01-01	2022-12-31	임대주택2	1,000,000,000	300,000,000	700,000,000	365	255,500,000,000	5,040,000

10 세법 개정사항 요약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법§52)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59의4)
 - 공제율 2년간('21.1.1~'22.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소법§59의4)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20% 신설 및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에 추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소법§81의2)
 - MAX(①, ②) 적용
 -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소법§81의14)
 - (미제출가산세) 신고금액 * 1%
 - (불성실제출가산세) 사실과 다른 금액 * 1%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소법§150)
 -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월할 계산)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소법§150)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건수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소령§40의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30의4)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공제세액 납부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7)
 - (당초) 총급여액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 (변경)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적용기한) 2021.12.31. → 2023.12.31.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91의20)
 - (가입요건) 만19~34세,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연 600만원 한도)
 -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시 또는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공제 제외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포함되지 않음
 - (적용기한) 2023.12.31.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조특법§95의2)

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 15%

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 17%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22의3)

- (월세액)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10% →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12% → 17%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20%) 신설

- (적용기한) 2021.12.31. → 2023.12.31.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126의2)

-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신설 등

-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40%(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소비증가분 10% → 20%(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증가분)

- (공제한도) '전체 소비증가분 + 전통시장 증가분' 사용액의 20%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